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 관리 협조 요청(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4.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요 조치 사항>

구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23시 운영시간 → (변경) <u>24시 운영시간 제한</u></li> <li>◦ 대상시설(13종)</li> <li>▲ 유흥시설 등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실내체육시설</li> <li>▲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내국인) ▲ 오락실</li> <li>▲ 멀티방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li> <li>※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u>23시→24시로 연장하며, 종료시각도 익일어사→02시로 연장</u></li> </ul>
사적모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9인 이상 금지 → (변경) 11인 이상 금지</li> </ul>

※ 그 외 방역조치는 현행 유지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4.4.(월) 0시 ~ 2022.4.17.(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②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적용

###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0종) 및 종교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11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10인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2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단, 2021.12.16. 0시 이전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경기(시합) 시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사적모임 예외)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3. 이에,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내부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함과 동시에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지속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전북음식문화연구회,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집단급식조리협회, 한국커피과학회, 한국향미유통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협회, 대한아이스크림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입육협회,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대한수의사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주류안전협회, 전북대학교총장, 한양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식품안전정보원장, 수협중앙회장,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푸드원텍(주), 식품안전교육원, (주)한국식품정보원,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주)세스코,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주)에프엠코리아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해숲식품안전솔루션,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36개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7개소)

주무관	민혜욱	사무관	남백상	식품관리총괄 과 과장	전결 2022. 4. 2. 요규섭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2408	(2022. 4. 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64	팩스번호	0502-604-5921	/ mho7256@korea.kr	/ 비공개(5,7)